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회원 전원 투표방식 신설 등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22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회원 전원 투표방식 신설 등	2
※ 참고자료	7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7
2. 경기단체 회장 선출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규정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7. 13.
3. 회 부 일: 2026.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회원 전원 투표방식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전자적 방식의 투표 근거를 마련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3(경기단체 회장의 선출 등) ① 경기단체의 임원 중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투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의미함¹⁾.

현행법은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경기단체가 가입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 하위 규정에서 이를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는 대의원·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함³⁾.

그런데 경기단체 회장이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됨에 따라 현장 체육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인 추출·선정 및 투표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경기단체 회장의 회원 전원 투표 선출, ② 전자투표 방식 도입, ③ 전문기관으로의 선거관리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여 경기단체 구성원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기단체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고, 전자투표 도입

1) [참고자료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2)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 중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에 해당함. ([참고자료 2] 경기단체 회장 선출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규정)

3)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개별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및 인적구성을 설정하여야 하고, 종목단체의 특성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및 선거위탁을 통해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 중으로, 회원 또는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함.

[경기단체 회장선거제도 개편(안) 사례: 대한축구협회]

구분	개편 이전	개편 이후
선거인단 규모	200여 명	2만여 명 내외
구성	당연직 대의원·임원 및 무작위 추첨된 전문선수·지도자·심판 등	- 전문선수: K1~K4, WK, U리그 등 4,000~6,000명 - 동호인: K5~K7 대표, 생활체육대축전 선수 등 4,000~6,000명 - 등록지도자 4,000~6,000명 - 등록심판 3,000명, 기타(정회원단체 등) 1,000명 등 ※ 동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개정안 내용 중 ‘회원 전원’의 투표 선출 규정과 관련하여, 경기단체 회원의 자격과 범위는 법률이나 하위 법령이 아닌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바⁴⁾, 각 경기단체의 정관 개정 방향

4) <경기단체 회원 예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르면 경기단체(대한체육회 규정상 ‘회원종목단체’를 의미함)의 회원에는 ‘시·도 종목단체’ 등이 포함
- 대한축구협회 회원: ① 시·도 축구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② 협회 등록 선수·지도자·심판 등이 포함(「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10조)

에 따라 ‘회원’의 실제 의미와 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각 경기단체 정관상 회원 자격이 ‘개인’인 경기인뿐만 아니라 시·도 협회 등 ‘단체’에만 부여된 경우도 존재하므로, ‘회원 전원’이라는 용어는 개인 경기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를 포섭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② 현재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거 위탁 필요성에 공감하나, 선거관리 역량 요건의 파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대통령령 위임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이 입법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이는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노력과도 부합하나, 경기단체의 정관상 회원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회원 전원’ 문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전과 같이 대의원에 의한 간접적 선거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임.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원: 시·도회원단체 등(「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 제5조)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단체 회장 선거관리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22대 국회 선거관리 위탁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발의의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심사경과
김재원의원 (제2207802호)	○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25.1.24.	소위 계류 중
조계원의원 (제2220035호)	○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공정한 선거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 선거 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26.7.20.	전체회의 미상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 회원종목단체(71개) - 정회원, 준회원 -

(‘26.8.4. 기준)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1	대한가라테연맹
	2	대한검도회
	3	대한게이트볼협회
	4	대한골프협회
	5	대한국학기공협회
	6	대한궁도협회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8	대한근대5종연맹
	9	대한민국농구협회
	10	대한당구연맹
	1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2	대한럭비협회
	13	대한레슬링협회
	1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5	대한루지경기연맹
	16	대한바둑협회
	1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18	대한민국배구협회
	19	대한배드민턴협회
	20	대한보디빌딩협회
	21	대한복싱협회
	22	대한볼링협회
	23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24	대한빙상경기연맹
	25	대한사격연맹
	26	대한사이클연맹
	27	대한산악연맹
	28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9	대한정구협회
	30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31	대한수영연맹
	32	대한수중.핀수영협회
	33	대한스쿼시연맹
	34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35	대한승마협회
	36	대한씨름협회
	37	대한아이스하키협회
	3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39	대한양궁협회
	40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41	대한역도연맹
	42	대한요트협회
	43	대한우슈협회
	44	대한유도회
	45	대한육상연맹
	46	대한조정협회
	47	대한민국족구협회
	48	대한주짓수회
	49	대한민국줄넘기협회
	50	대한철인3종협회
	51	대한체조협회
	52	대한축구협회
	53	대한카누연맹
	54	대한컬링연맹
	55	대한탁구협회
	56	대한태권도협회
	57	대한택견회
	58	대한테니스협회
	59	대한파크골프협회
	60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61	대한펜싱협회
	62	대한하키협회
	63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64	대한핸드볼협회
준 회 원 (7)	65	대한서핑협회
	66	대한요가회
	67	대한크라쉬연맹
	68	대한크리켓협회
	69	대한테크볼협회
	70	한국e스포츠협회
	71	대한MMA총협회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공직유관단체는 정회원단체 중 45개 단체임()

[참고자료 2] 경기단체 회장 선출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규정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2026. 7. 16.)

제7조(회원단체)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13조의2(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시·도종목단체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회원종목단체 규정」(개정 2026. 8. 26.)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선거인으로 구성하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선거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26.>

1.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의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종목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및 대의원

3. 체육회가 구축·운영하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해당 종목의 경기인으로 등록된 사람(단,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인 포함 가능)

④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제3항에 따르고, 그밖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 등록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6.>